

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 
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 
검 토 보 고

## 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30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22. 7. 13.
4. 회부일자 : 2022. 7. 14.

## II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,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, 제9조 규정에 의거 「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# Ⅲ. 주요내용

#### ○ 기금운용계획(안) 규모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	2021년도 기금운용계획	증 감 액	비 고
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(재정안정화계정)	967,870,835	-	967,870,835	

### Ⅳ. 참고사항

#### 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## 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0호로 제출되어 2022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 가. 기금 개관

- ‘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’은 2016년 11월 7일 행정자치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계획」에 따라 2017년 10월 24일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가 신설되면서 도입된 기금입니다.<sup>1)</sup>
- 이후 동 ‘재정안정화기금’은 2020년 6월 9일 「지방재정법」이 개정되면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이하 ‘지방기금법’) 제16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과 통합되어 ‘통합재정안정화기금’으로 변경되었으며(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 삭제), 이후 교육부와 시·도교육청 회의를 통해 동 기금의 명칭을 ‘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’으로 변경하였습니다.
- 이러한 법정기금인 ‘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’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

1) 행정자치부, 지자체, 연도간 재원조정 위한 「재정안정화기금」 도입, 2016.11.7

거나 심각한 경제침체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, 동 기금은 경제여건에 따른 재정수입의 불안정성을 보완하여 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.

- 특히 교육청과 같이 세입예산 중 내국세 등의 이전수입이 약 96%에 이르는 의존재원형 세입구조에서는 동 기금의 설치·운영이 경기침체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고, 예비비 잔액(잉여금) 발생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바, 현재 17개 시·도교육청 중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교육청이 동 기금을 설치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## 나. 수입·지출 계획

- 2022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,620억원, 기금운용수익(이자수입) 58억 7천 1백만원을 포함한 총 9,678억 7천 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(이하 ‘재정안정화기금 조례’) 제4조제1항에<sup>2)</sup> 따른 기금 조성재원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다만 동 기금의 조성액 범위는 지방기금법<sup>3)</sup>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4조제2항의 각 호<sup>4)</sup>에서 규정하고 있으나, 이는 최소기준만

2) 제4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(이하 “교육비특별회계”라 한다) 전입금
2. 기금운용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3)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영) ① ~ ⑥ (생략)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4) 제4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(생략)

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.

1.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

을 규정하고 있어 자칫 과도한 기금 규모의 운용은 대·내외적으로 교육재정이 과다하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는바,<sup>5)</sup>

서울시교육청은 기금의 적립 및 운용에 대한 별도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한편 동 기금의 지출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는바, 이는 동 기금이 당장 필요한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조성된다기보다 향후 발생할 재정수입 감소에 대비한 예비적 차원에서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
-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운영계획안에서 기금을 교수·학습 지원 및 에듀테크 기반 구축, 디지털 행정혁신 및 학교 정보화 지원 체계 구축 등에 사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기금의 적립범위와 기금의 사용범위가 법과 조례<sup>6)</sup>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현재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는 기금 운용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.

---

트 이상

가. 보통교부금(다만,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한다)

나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

다. 자체수입

2.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

3.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
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

5) 금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수입액은 서울시교육청의 금번 추경예산액 14조 3,730억원 대비 6.7%에 해당함.

6)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1. 해당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

2. 대규모 재난·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

3.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(BTL)에 충당할 경우

4.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

- 따라서 동 운용계획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금운용은 사실상 조례의 개정이 없이는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인바, 이와 같은 막대한 규모의 기금 운용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해야 할 시급한 정책사업의 추진 및 노후된 시설환경개선 등의 사업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할 것입니다.
- 이러한 점에서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용 목적의 불명확성, 운용 제한 등의 측면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, 대규모 기금의 적립인만큼 기금의 규모면에서 개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이상으로 「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 관계 법령

## 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**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 지방재정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**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( 약칭: 지방기금법 )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**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  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  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-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  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  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-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-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  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-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